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운영위원회 제안)

의안 번호	2022-39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. 3. .

발 의 자: 운영위원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
정비하고,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
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5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의 정수가
“1/3을 초과할 수 없다”에서 “1/3 이하로 한다”로 개정(안 제2조제1항)
- 다.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검사위원 선임방법 추가(안 제3조제1항)

라.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단서 조항을 분리하여 항 신설(안 제8조제3항 ~ 제4항)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 ~ 제2조, 제4조 ~ 제9조)

4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, 제84조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수 및 선임방법) ①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5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선임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.

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제4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감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대표 감사위원) ① 선임된 감사위원 중 의원은 대표 감사위원이 되며, 의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의원이,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.

② 대표 감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대표 감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4조(감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)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감사위원 자격이 상실된다. 이 경우 의장은 자격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감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2.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3.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

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
2.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

3.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감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.

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감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.

제5조(감사위원의 직무) ① 감사위원은 구청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, 세출 결산 및 그 증빙 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감사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감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

된다. 다만, 의회에서 결산 심의 시 필요에 의해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.

⑤ 감사위원은 의장이 결산심의 시 필요에 의하여 설명회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6조(감사위원에 대한 제재) ① 감사위원이 제4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3호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감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없다.

② 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, 사무보조원,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감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,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,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.

③ 제1항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감사의견서 제출 후 의회에 출석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.

④ 제1항의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.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축 장

성 명:

(주 소)

귀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○○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(인)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, 제84조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

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 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